

의안번호	2211148
의 퇴 인	박용갑 의원
회 답 일	2025. 3. 28.
추 계 번호	25F19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적용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경우 소득세 및 법인세수는 2027년 2조 6,697억 원, 2029년 2조 8,648억 원 등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간 총 8조 3,052억 원(연평균 2조 7,684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 동 규정의 세액감면이 3년간 적용되므로 세수효과는 2027~2029년까지 발생

[표 1]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 소득세 및 법인세, 2027~2029년

(단위: 억 원)

	2027	2028	2029	누적	연평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적용 기한 3년 연장(안 제7조제1항)	26,697	27,707	28,648	83,052	27,684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7조제1항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 및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으로 감면 업종 변경 - 적용기한: (현행) 2025.12.31. → (개정안) 2028.12.31. - 감면업종: (현행) 자동차정비공장 → (개정안)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정비업	

III.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
1	안 제7조제1항(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에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으로 감면 업종 변경을 배제하고 추계함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은 감면 업종 중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을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합리적 추정이 불가능하여 본 추계에서 제외함
 -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과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을 경영하는 업종 간 특별세액 감면액을 구분하여야 하나, 자료의 부재 등으로 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음
- 개정안 부칙에 따라 개정안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전제하며, 세수효과는 신고 및 납부시기에 따라 2027년부터 발생
 - 개정안에 따른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은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되며, 세수효과는 2027년부터 발생한다고 가정
 - 동 규정의 세액감면이 3년간 적용되므로 세수효과는 2027~2029년까지 발생
- 개정안에 따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의 세수효과는 다음의 가정을 적용하여 추정
 - 향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액 중 소득세 감면액의 증감률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종합소득세 증가율 전망(2024.10.)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가정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액 중 소득세 감면액의 증감률은 종합소득세수 증감률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임에 따라 회귀분석을 통해 두 변수 간 관계식을 도출한 후, 종합소득세 증가율 전망을 통해 향후 소득세 감면액 추계
 - * 2016~2024년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액과 종합소득세의 상관계수: 0.844
 - 향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액 중 법인세 감면액의 증감률은 최근 5년('21~'25년)간 연평균 증가율(3.6%)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가정
 - 법인세 감면액은 최근 법인세 증감과 관계없이 대체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3. 상세 추계내역

가. 제도개요 및 감면실적

- (제도개요)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업종·

규모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

- (개정연혁) 중소기업과 기술개발 등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1993.12.31. 개정된 규정으로 감면 업종을 추가·변경하여 감면대상을 확대·조정하고, 지역별 차등 세율 적용 및 고용과 연계된 감면 한도를 설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
 - 1995.12.29. 일부개정: 부가통신업·연구개발업·방송업·엔지니어링사업 등을 추가
 - 2000.12.29. 일부개정: 광업·건설업·운수업·의료기관 등을 추가하고 수도권 소기업과 수도권 외 지역으로 중소기업으로 차등하여 지원
 - 2017.12.19. 일부개정: 중소기업 고용창출을 유인하기 위하여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고용인원 감소시 1인당 500만 원을 차감하는 감면한도를 신설
 - 2018.12.24. 일부개정: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제외
 - 2022.12.31. 일부개정: 알뜰주유소 특례 신설, 지식기반산업 특례 폐지
- (현행규정)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업종·기업 규모에 따른 감면 비율(5%~30%)을 곱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

[표 2]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비율

(단위: %)

업종 구분	중기업		소기업 ¹⁾		비고
	수도권 안	수도권 밖	수도권 안	수도권 밖	
도소매/의료업		5	10	10	한도 1억 원 ²⁾
기타 업종		15	20	30	
통관대리 관련 서비스		7.5	10	15	
알뜰주유소	10	15	20	20	

주: 1) 소기업 판정 기준: 업종별 매출액이 「중소기업법 시행령」 별표3을 준용하여 산정한 규모 기준 이내

2) 전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한도 = 1억 원 - 상시근로자 1명×5백만 원

□ (감면실적) 2019~2023년까지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실적은 2019년 신고기준 2조 419억 원에서 2023년 신고기준 2조 5,336억 원으로 증가

- 「조세지출예산서」 상 2024년 전망치까지 포함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실적은 2022년을 제외하면 감면실적 변동이 크지 않고,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표 3]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실적 및 전망: 법인세 및 소득세, 2019~2025년

(단위: 억 원, %)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p	2025p'
법인세	9,535	9,879	9,534	10,858	11,598	10,506	11,002
		(3.6)	(△3.5)	(13.9)	(6.8)	(△9.4)	(9.5)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p	2025p'
소득세	10,884	10,679 (△1.9)	9,995 (△6.4)	12,632 (26.4)	13,738 (8.8)	13,133 (△4.4)	13,998 (6.6)
합계	20,419	20,558 (0.7)	19,528 (△5.0)	23,489 (20.3)	25,336 (7.9)	23,639 (△6.7)	25,000 (5.8)

주: 1) p는 잠정실적, p'는 전망치

2) ()안은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실적 등에 대한 전년대비 증감율

자료: 대한민국 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신고연도

나. 추계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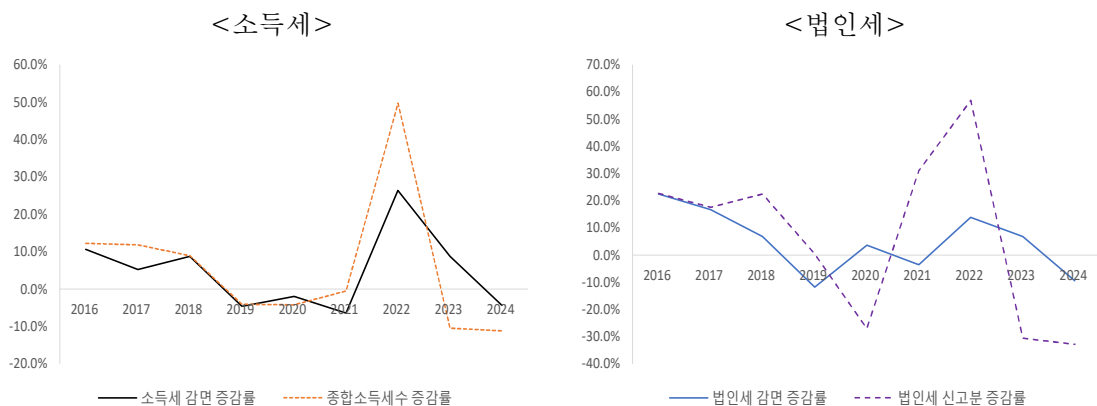
□ (감면실적 증감률과 세수증감률의 상관관계) 세목별 감면실적 중 소득세 감면실적의 증감률은 종합소득세수 증감률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임

- 2016~2024년간 소득세 감면실적 증감률과 종합소득세수 증감률의 상관계수는 0.844 수준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임
- 반면 동 기간 법인세 감면실적 증감률과 법인세 신고분 증감률의 상관계수는 0.454 수준으로 높지 않게 나타남

－ 2020년 이후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로 경기국면 하강시 대기업을 중심으로 법인세수가 감소한 것에 반해, 동 기간 법인세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실적은 대체로 소폭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기 때문에 세수와 감면실적의 추세가 상이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

* 법인세 감면실적과 법인세 신고분의 상관계수: ('16~'19년) 0.871, ('20~'24년) 0.458

[그림 1]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증감률과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분 증감률



자료: 「조세지출예산서」 및 「국세통계연보」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2016~2024년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액 중 소득세 감면액의 증감률과 종합소득세수 증감률의 관계식을 회귀분석하여 추정하면, 종합소득세수

1% 증가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소득세 감면액은 0.416% 증가

- 회귀식의 종속변수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액의 증감률, 설명변수는 종합소득세수 증감률 및 연도더미(2022년=1, 그 외=0)로 구성
- 추정결과 회귀식은 다음과 같이 구성

$$* \quad \% \Delta \text{감면액}_t = 0.001 + 0.416^{**} \% \Delta \text{종합소득세수}_t + 0.209^{***} D_t + e_t$$

(0.046) (2.657) (8.628)

단 ()안은 t값 이며, **는 5% 유의수준에서, ***은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 (소득세 세수효과 추정) 소득세 감면액 증감률에 대한 회귀식을 바탕으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중 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정하면 다음과 같음

- 국회예산정책처의 향후 종합소득세수 전망치(2024.10.)를 바탕으로 향후 소득세 감면액 증감률을 추정하면, 세수효과는 2027년 1조 4,878억 원에서 2029년 1조 5,951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계

[표 5]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중 소득세 감면액 추정

(단위: %, 억 원)

	2027	2028	2029
종합소득세수 증감률 전망치(A)	7.4	9.2	7.5
소득세 감면액 증감률 전망치 (B=0.001+0.416×A)	3.2	3.9	3.2
소득세 세수효과 추정치 (C=전년도 세수효과×[1+B])	14,878	15,457	15,951

□ (법인세 세수효과 추정) 최근 추세를 반영하여 법인세 감면의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다음과 같음

- 최근 5년('21~'25년)간 연평균 증가율(3.6%)에 따라 법인세 감면액이 증가한다고 가정하면, 세수효과는 2027년 1조 1,819억 원에서 2029년 1조 2,697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계

[표 6]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중 법인세 감면액 추정

(단위: 억 원)

	2027	2028	2029
법인세 세수효과 추정치	11,819	12,250	12,697

다. 추계결과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는 경우 소득세 및 법인세수는 2027년 2조 6,697억 원, 2029년 2조 8,648억 원 등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간 총 8조 3,052억 원(연평균 2조 7,684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표 7]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 소득세 및 법인세, 2027~2029년

(단위: 억 원)

		2027	2028	2029	누적	연평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 세액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안 제7조 제1항)	소득세	14,878	15,457	15,951	46,286	15,429
	법인세	11,819	12,250	12,697	36,766	12,255
	합계	26,697	27,707	28,648	83,052	27,684

IV.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2과	이수인	백경엽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수인	02-6788-4839	suin2025@assembly.go.kr